의안번호	2218416
의 뢰 인	추미애의원
회 답 일	2026. 9. 2.
추계번호	26D22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4조의2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제1항)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재량규정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쪽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여야 함(제3항)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74조의2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도록 하여야 함

❑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도입 및 이를 녹음·영상녹화 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운영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건비와 법원에 진술녹취 장소를 설치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당사자에 의한 신문 신청 건수 및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별 필요 인력 및 장비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 현시점에서 당사자의 신청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5년 간 민사소송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연도별 민사소송 처리건수: 2021~2025년

(단위: 건)

구 분	202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심(소액 제외)	249,327	252,867	269,851	289,925	293,813
항소심	55,238	57,111	58,382	59,819	61,578
합계	304,565	309,978	328,233	349,744	355,391

자료: 대법원

○ 또한, 개정안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절차의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이면서 업무 증가로 인한 신규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공증인 등) 수수료, 일당 및 여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법원이 영상녹화 등을 명할 사람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비용추계를 위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상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개정안에서 해당 법원공무원의 직급을 한정하지

않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규정하여 해당 직무를 담당할 법원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진술녹취 장소 설치비용의 경우 기존 장소의 활용 여부 및 기존 장비를 고려한 법원별 영상녹화시설 등 장비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